

준 재 심 소 장

준재심원고(피신청인)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준재심피고(신 청 인)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당사자간의 귀원 20〇〇자〇〇〇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소전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, 준재심원고(피신청인)는 20〇〇. 〇. ○. 작성된 화해조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.

준재심 할 화해조서의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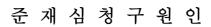
(화 해 조 항)

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20〇〇. 〇. 〇〇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.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.

준 재 심 청 구 취 지

- 1. 이 사건 화해조서를 취소한다.
- 2.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



- 1.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1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.
- 2. 준재심원고가 준재심사유를 안 날에 대하여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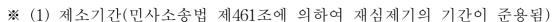
첨 부 서 류

1. 화해조서등본1통1. 형사고소장1통1. 준재심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0. 00.

위 준재심원고(피신청인)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관할법원	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된 법원	제소기간	※ 아래(1)참조 🙀
제출부수	준재심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 -	관 련 법 규	민사소송법 제461조
	출 	7 A) 7 A) (=) -	المال عاما المال
준재심대상 -	군재심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(화해조서·포기조서·인낙		
	조서)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・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민사소		
	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재판을 구하는		
	것을 말함(민사소송법 제461조).		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소		
	장·항소장·상고장·반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을 인지로 첩부하		
	여야 함.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(제소전 화해조서)에		
	대한 준재심소장에는 원래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5분의 1을		
	첩부(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).		
	·송달료 : ㅇㅇㅇ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준재심사유	(민사소송법 제451조)		
	1.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		
	2.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		
	3. 법정대리권·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		
	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. 다만,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		
	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	
	4.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		
	5.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		
	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		
	6.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,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		
	7. 증인·감정인·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		
	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		
	8.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,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		
	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		
	9.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		
	10.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		
	11.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		
기 타	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기 · 제소저하체에 이어서는 조겨되 소소		
	·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은 화해절차뿐이므로, 재심사유가 있어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제소전		
	화해를 취소하는 준재심 판결이 확정된다 하여도 부활될 소송이 없음은		
	물론,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어 그 제소		
	전화해에 의하여 생긴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는 것뿐		
	이다(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다14275 판결).		



-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,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함(민사소송법 제456조).
- 다만, 대리권의 흠,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457조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상소 및 재심 >> 재심